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315
----------	-----

발의년월일 : 1997년 9월 일

발 의 자 : 민태송의원 외 4인

1. 주 문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제 안 이 유

-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 휴전선 접경지역중에서 남북간의 교통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도권 인구과밀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통일이후 많은 인구가 북한으로부터 유입될 경우 어느지역보다 자연환경의 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파주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안이 제정될수 있도록 '96. 7월 통일원에서 입안한 법률안 조문에 대해 보완을 건의코자 함.

3. 제 출 처 : 통일원장관, 국회의장, 신한국당파주지구당위원장 이제창의원

님께

건의요지

- .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늘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접경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휴전선 접경지역중에서도 남북간의 교통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인구과밀지역과 인접된 파주는 통일이후 인구 유입량이 가장 클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 .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될 시 그 어느지역보다도 자연환경 파괴와 난개발의 우려가 높은지역이라 하겠습니다.
- .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으며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도 이에대한 당위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7월 통일원에서는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입안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법안이 입안된지 1년여가 되도록 입법부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 . 파주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관계기관에 건의하오니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하시어 획기적인 조치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1997년 9월 일

의 장 김 준 수
 부 의 장 이 종 필
 운영위원장 송 규 범
 총무보사위원장 민 태 승
 산업건설위원장 유 광 용
 의 원 박 도 연
 윤 병 호

의 원 황 의 형
 차 익 준
 오 기 덕
 이 찬 희
 박 해 룡
 조 경 래
 장 석 천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촉구

■ 주 문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접경지역의통일기반 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 법안가운데 일부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조문의 보완을 건의한다.

■ 주문의 배경

1. 법적 규제 근거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토지거래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권역별 행위제한)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같은령 제6조, 같은령 제11조

2. 우리의 현실

- 파주는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철도로 연결되는 수도서울과 30분거리의 1일 생활권에 위치하며, 김포공항, 인천신공항과 연결되는 육상교통은 물론, 한강, 임진강을 연계한 수상교통이 가능해질 경우 국내 최고의 교통여건을 갖추게 될 것임.
- 또한 DMZ내의 자연생태계가 원시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寶庫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임.

- 그러나, 휴전선 접경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이후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 경제활동의 많은 제약을 받아옴으로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여건을 살리지 못한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음.
- 90년대 들어서 남북정세 변화와 정부의 정책전환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소완화되어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서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되기에 이름.
- 남북통일이 실현될 때 북한으로부터 유입될 수백만의 이주민을 1차로 수용해야 하는 과주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아직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등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아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 주문내용

가. 접경지역 균형개발 특별지원법 제정 촉구

- 이 법은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이면서 그간 지역 개발을 제약해온 각종 법령이나 제도들보다 우월한 상위개념의 특별법이어야 함.
- ※ 이 법 해당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군사시설보호법적용 예외지역으로 규정.
- 통일이후를 내다본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제시와 토지분쟁해소 및 토지소유권의 공적규제 근거를 확보하고, 실향민에 대한 정착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접경지역의 개발재원확보를 위해 특별재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 지역에서의 모든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함.

나. 공간구도에 대한 의견

- 접경지역개발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의 자연생태계 복원지역은 개발 유보지역으로 설정하여 생태환경의 학술적 조사와 남북교류 협력의 연구단지로만 허용하고, 통일이후 인구유입에 따른 계획도시 조성공간으로 유보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함.
- 민통선 이남지역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되, 임진강 수계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안보관광시설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짜임새 있게 개발하고,
- 자유로·통일로·국도37호선이 교차하는 문산지역을 남북교류와 협력단지로 특별지정하여 물류유통기능, 생산기능, 주거기능을 골고루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다. 법률안(통일원 입안)에 대한 의견

- 법률안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의 별표1항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성장관리 권역에서의 행위제한과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한 공장 및 학교 등의 총량규제와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배제토록 하거나 법률안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등)에 포함되도록 해야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 지정 배제로 공장, 대학설치 등에 대하여 총량 규제 완화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법률안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등)에 역시 포함시켜야 함.

→ 경미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제처리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토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규정한 토지수급계획 내용에
적합하도록 한 조항이 배제되도록 법률안 제17조에 신규 반영.

→ 토지이용제한 규제의 의제처리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에 대하여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률안 제17조에 신규 반영.

→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의제처리

◦ 법률안 제35조(특별우대사업)에 “기 입주한 마을 및 출입 영농인의
정착촌 개발사업”을 포함.